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9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9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보건소장)
- 발의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검토기간: 2024. 9. 12.(목) ~ 9. 20.(금)

2. 개정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「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(안 제4조제1항)
 -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·중·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절대보호구역 지정내용 삭제
-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에 대해 명시한 조문 추가(안 제4조제4항)
-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제1항)
 - 과태료 금액 5만원으로 상향
- 인용 조문 정비(안 제9조제1항제3호, 제11조)
 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

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며,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안 제4조에서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서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구청장이 지정·고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**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** 보이며
- 안 제8조에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한 사항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
- 또한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서 “제16조의4제1항제1호”를 “제16조의5제1항제1호”로 개정하는 것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개정사항¹⁾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2016년 6월 21일 일부개정, 2016년 12월 23일 시행된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함.

관계법령

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(이하 “학교경계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②~⑤ <생략>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4조(과태료) ①② <생략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
- 1의2.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·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(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2.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
3.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- 3의2.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: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4. 법 제34조제3항제2호(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